

| | |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
| | 2025년 6월 24일(화) | 노동안전보건국장 이정훈 010-7380-1932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 |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위험성 평가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6월 24일 화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 발언
 - 아리셀 참사 1주기 유족 발언 :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법개정 발의 계획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위험성 평가 현장 실태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위험성 평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의미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3. 법개정 발의 주요 내용, 해외사례 및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

[붙임] 1. 기자회견문

아리셀 참사 1주기, 위험성 평가 실질화 법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1년전 오늘 6월 24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순식간의 폭발로 2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오로지 이윤에만 눈이 멀어, 리튬배터리 군납을 맞추려는 욕심에 노동자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공정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불거진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불이 난 공장에 설치된 출입문은 피난 방향과 반대로 설치돼 있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비상구에는 보안장치가 설치돼 대피할 수조차 없었다. 불법과건 문제, 작은사업장 문제, 이주노동자의 문제 등 한국사회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의 문제가 집약되어 발생된 참사였다.

이런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복사 불이기식으로 진행했는데도.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하였고,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산재보험료를 17-20% 감면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하자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보다 예방이라며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로드맵에서 발표했던 위험성 평가 처벌조항 도입조차 추진하지 않고,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횡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 사업장조차도 10곳 중 4곳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34%는 평가 전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하지 않고, 고시개정만 일부 진행하였다.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정부도 매번 외치고 있지만 실질 제도개선과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 위험성 평가에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 보장하고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실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운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업들의 안전보건조치 면피용으로 전락할 것이며,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늘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형식적 위험성 평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선언한다.

1년에 2,400여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산재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모두가 참여하여, 기준에 맞게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에서 원청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하청,특고,감정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교육, 평가 보고 의무와 노동부 감독 및 처벌조항 도입 등 위험성 평가 내실화 법개정으로 노사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아리셀 참사 1주기에 산자들이 바뀌어나가야 할 작은 노력이지만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더 이상 안전을 뒷전에 두고 형식적 안전관리체계로 대충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산재를 줄이는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2025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 이용우

[붙임] 2. 발언문

(1) 아리셀 참사 1주기 유족 발언 : 김태운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김태운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내가 어느 소속의 노동자이고, 누가 진짜 사장인지, 어떠한 유해물질을 다루는지조차 모른채, 안전 교육이나 소방 훈련없이 납품기일을 맞추기위해 미숙련된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여 일하다 벌어진 예고된 기업살인이고 사회적 참사입니다.

아리셀은 2년 연속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리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로, 해당년도만 수정하여 제출한 평가서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고위험 유해물질 사업장임을 알고도, 4차례의 폭발 특히 참사 2일 전인 22일 폭발사고에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지 않아서’ 라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참사이후 내놓은 대책은 더 가관입니다. 비상구 디자인 개선비 1억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입구에 적재되어 있는 3만 5천개의 배터리가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있는 비상구마저도 일부 임직원의 지문인식이나 ID카드가 없으면 나갈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구를 표시하는 일차원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으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입국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교육은 현장의 상황과 너무나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내가 일하는 곳의 작업장의 상황에 맞게 내실있게 해야합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리셀만 보더라도 리튬배터리 폭발은 염화티오닐이라는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일차 질식사의 위험이 있고,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안되고 리튬소화기로만 진화가 되는데 한국에는 유일하게 삼성만이 독점하고 있어, 열폭주로 폭발할 경우 무조건 대피하여야 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기초안전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사업장에서 한다고 하는 교육마저도 형식적이거나 하지도 않은 교육을 했다고 서명하게끔 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더 의미가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의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또한,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영세중소사업장 229곳을 상대로 ‘불법파견과 인사노무 컨설팅’ 결과 83%가 노동법을 위반하였고, 38%가 불법파견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파견을 합법적으로 해달라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여 파견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이 불법적 고용구조에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참사를 되풀이 하겠다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의 발표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만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위험성 평가의 기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의 구조,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걸친 문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위험성평가 적용을 사업장 규모로 차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더 위험하고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인지 명확하여야 합니다. 왜 자본의 이윤을 위해 파견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까? 축소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언제 찢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강화하거나 작은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혹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 안전관리자를 두어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노동부가 직접 감독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만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과편된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사업으로 위험성 평가에 감독행정, 사업,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었지만, 현행 법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아무런 처벌 조항도 없고 노동부 보고의 무도 없어 정부 감독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켜 기소된 기업 대부분은 위험성 평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점검 노력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및 책임을 지는 예방체계가 아니라 ctrl+c, ctrl+v.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잘하면 되는 형식적인 서류정리로 인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였지만 사후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아리셀과 같은 끔찍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어졌음을 알수있었습니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에서도 3년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며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3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2022년 자료의 시행일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평가 자료를 조작하여 대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해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조, 건설, 화학, 보건의료, 운송, 서비스, 사무, 공공행정, 학교 등의 462개의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법 위험성 평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위법 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현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수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 1주기, 다시 투쟁을 결의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만이 노동자 산재사망을 줄이는 길이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울것입니다.

(3)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지난 정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

렇지만 아리셀 참사에서 확인하였듯 노동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유해. 위험요소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합니다. 우수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인증을 받았지만 아리셀 현장은 취급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만들지도, 노동자들에게 취급 물질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형식적인 평가뿐이었던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년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각 노동현장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노동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위험 기준을 정하고, 위험을 추정된 후 평가하고 제거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 법제도에서 전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 역시 이들의 평가 과정을 통해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진행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맡겨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위험성평가 실행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작동시켜 구현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 이수 같은 의무를 부가하는 것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고안해 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인 문제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아울러 ‘원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다합니다. 이것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입니다. 실제 위험을 평가해 제거함에 있어,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처벌 규정을 넣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바꿔 나갈 수 있게 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가 현장 변화를 실천하는 과정을 함께 겪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붙임] 3. 법개정 발의 주요 내용, 해외사례 및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

법개정 발의 주요 내용, 해외사례 및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

(1) 법개정 주요 내용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 위험성 평가에서 원청의 개선조치 등 원청의 의무 명확화
-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 대상을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
- 위험성 평가에 대한 노동자 대상 교육 실시 의무
- 위험성 평가 전과정에 노동자 참여 실질화(▲기존 노동자 외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보건 감독관/ 하청, 특고 등 해당 종사자/ 참여 ▲위험성 평가 참여 시간 유급보장)
- 위험성 평가 결과 노동부 보고 의무 및 미보고시 처벌조항 도입
- 위험성 평가 결과 정기 감독 의무 및 미실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처벌조항 도입

(2) 해외 사례

<외국의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 제도화>

- 영국 : 영국 보건안전법 1977년 ‘안전대표및 안전위원회 시행령’ 에서 노동조합 안전대표가 작업장내 위험조사, 재해조사와 같은 사업장 내 모든 보건안전문제와 활동에의 개입 보장
- 1989년 유럽연합의 위험성 평가 도입 시 기본지침
(the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 지침 11조 1항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모든 문제에 대해 노동자및 노조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며 사업주와의 논의에 공정하게 참가하도록 함. 위험 관리의 구성요소도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평가->위험성 관리의 전 과정에 작업자 관여(작업자에게 위험성 고지 또는 정보 제공, 작업자와 협의, 작업자의 참여,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작업자 대표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외국의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 사례>

| 구분 | 영국 | 독일 | 싱가폴 |
|-------|--|---|---|
| 사유 | -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위반 - 위험성 평가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위험성 평가 실시무사항의 충족을 위해 관할 관청이 지시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을 경우 | 위험성 평가 실시의무 위반 시 |
| 벌칙 내용 | 즉결재판: 5천파운드이하 벌금 기소재판: 12월이하 금고형 또는 벌금 안전보건청 홈페이지에 사업체명, 위반내용, 벌금액수 공개 | - 사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2만 5천유로 이하 과태료 - 사업자 또는 책임자가 반복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1차 : 1만달러 이하 - 2차위반 또는 연속 위반시 2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6월이하 금고형 |

(3) 민주노총 실태 조사 결과 요약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4. 8. 27. - 10.16.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조사참여 :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
- 조사 대상의 특성
 -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대상 조사임.
- 조사 업종 : 제조, 건설, 화학, 보건의료, 운송, 서비스, 사무, 공공행정 등

2) 실태조사 결과 요약

① 위험성 평가 실시

-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한다 61.6%
-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22.9%
- 위험성 평가 상시 평가 대체로 건설현장은 83.9%가 15분 내외로 실시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으로 정기평가, 수시평가 대체하는 결과

② 위험성 평가 대상

- 모든 유해위험업무 대상 실시한다. 61.1%만 법 준수. 감정노동, 정신건강 분야 미 실시는 22.4%. 28.6%는 실시 대상 기준조차 알 수 없음.
- 조사 대상 중 감정노동 위험업종인 보건의료, 사무, 서비스, 학교, 공공행정 으로만 한정된 결과 분석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 위험성 평가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 30%, 실시 기준 모른다 포함하면 54%가 미 실시

③ 위험성 평가 실시 전 전체 노동자 대상 교육 실시 41.2%에 불과함. 58.8% 법 위반

- 위험성 평가 지침에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등에 노동자 참여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노동자 대상 교육은 41.2에 불과하여. 58.8% 사업장이 법 위반.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음도 28.8%에 달함.

④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되지 않는다. 34% 법 위반
- 위험성 평가 단계별 노동자 참여 보장 여부 - 노동자 참여가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어 법에서 규정된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개선안 수집, 개선이행 점검 노동자 참여도 57%- 67%가 아니라로 응답하여 법 위반되고 있음

⑤ 위험성 평가 실시 이후 현장 개선에 대한 평가는?

- 위험성 평가 이후 형식적 개선만 진행하거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 - 65.8%
- 대부분 현장 개선 진행된다 (34.2%)
- 형식적 개선 또는 일부 개선만 진행된다 (51.7%)
- 개선안이 없거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 (14.1%)

⑥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에 위험성 평가 형식적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다. 67.2%

⑦ 위험성 평가 제도개선 필요성 - 노동조합 참여 보장이 76%로 1 순위